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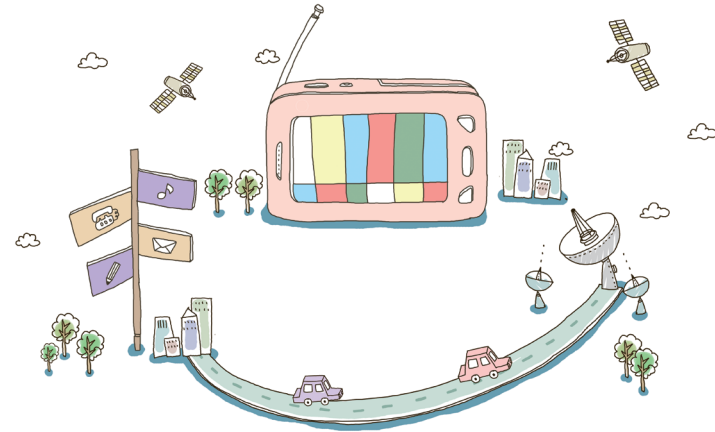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비교



구분	대상	내용	제정(시행)일 (담당부서)
방송프로그램 제작·방영권 구매 표준계약서 (2종)	방송사-제작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사, 제작사가 부담하는 제작비 내역 · 권리·수익배분 비율 - 저작재산권은 기여도에 따라 상호 인정하되 유통활성화를 위해 이용허락 청구는 일원화 가능 · 출연료 미지급 방지 · 손해 배상, 분쟁해결 절차 	'13.8.1. 제정 (시행) (방송영상광고과)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근로·하도급·업무위탁) 표준계약서 (3종)	방송사 - 제작스태프, 제작사 - 제작스태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스태프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 (계약 기간, 업무내용, 임금 등 명확화) · 불공정한 계약사례 개선 (부당계약 취소 금지, 손해배상) · 안전배려 의무 · 스태프 임금 미지급 방지 	'14.8.28. 제정 (시행), (방송영상광고과)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1종)	방송사-방송작가, 제작사-방송작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고료 금액, 지급시기 및 세부내역 · 부당한 계약취소 등 금지 · 저작권 및 2차이용 시 사용료 · 프로그램 홍보 및 출품, 협찬 및 간접광고 등 	'17.12.28. 제정 (시행) (방송영상광고과)
대중문화예술인 (배우·가수)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2종)	방송사 - 대중문화예술인 - 매니지먼트사, 제작사 - 대중문화예술인 - 매니지먼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사·제작사-대중문화예술인 간 권리 의무 관계 명확화 · 방송제작 환경 개선 (휴식공간, 사고조치, 촬영시간 등) · 출연료 미지급 방지 	'13.8.1. 제정 (시행) (대중문화산업과)

※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유형별 사용기준, 핵심조항, 작성예시 등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사용지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표준계약서로
정당한 권리를 보호 받으세요!



방송분야 표준계약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자료공간 법령자료 표준계약서,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사용지침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정보마당 서식자료 표준계약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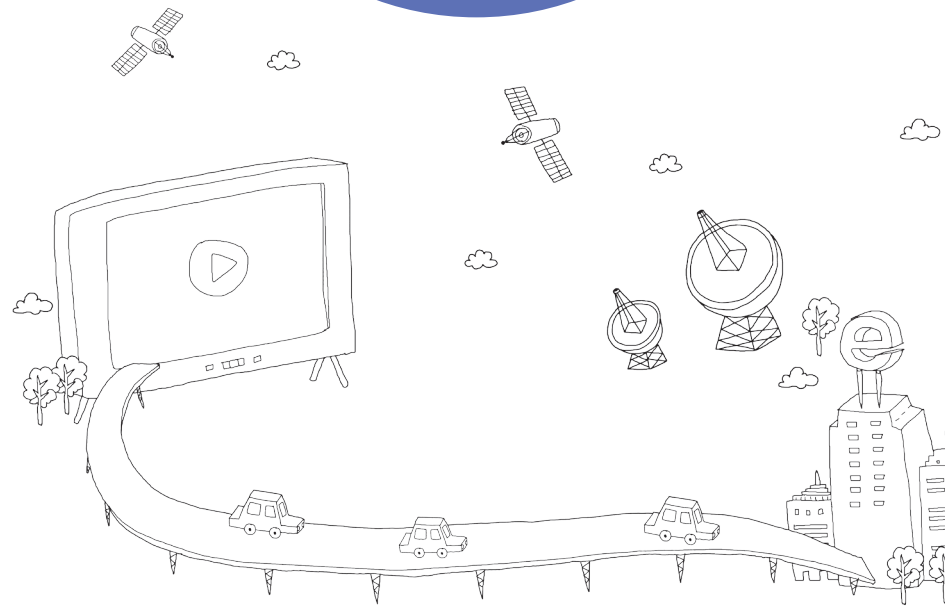
문의사항 연락처

문화체육관광부 www.mcst.go.kr
방송영상광고과 044-203-3232, 3239
대중문화산업과 044-203-2464

한국콘텐츠진흥원 www.kocca.kr
방송산업팀 061-900-6330, 6332
산업정책팀 061-900-6550

표준계약서로
정당한 권리를 보호 받으세요!

알기쉬운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방송분야 표준계약서란

방송산업·대중문화예술의 공정한 산업생태계 조성 및 발전과 방송영상 제작·유통의 활성화를 위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2조의2(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5조(표준계약서)」에 따라 방송사·제작사·스태프·방송작가·대중문화예술인(가수·배우) 매니지먼트사가 각자의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한 「8종의 표준계약서」입니다.

| 표준계약서 8종 |

- 1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 2 방송프로그램 방영권 구매 표준계약서
- 3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
- 4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
- 5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위탁계약서
- 6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 7 대중문화예술인(가수)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 8 대중문화예술인(배우)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방송프로그램 제작·방영권 구매 표준계약서 (2종)



목적 방송사와 제작사 간에 방송프로그램 이용 권리와 수익 배분 등을 합리적으로 규정하여, 방송콘텐츠 제작 및 유통을 활성화하고, 방송영상산업의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제정

계약 당사자 방송사 - 제작사

- 주요내용**
- ▶ **대상**
 - < 제작 표준계약서 > 외주인정기준의 요건을 갖추고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가 공동으로 제작하는 방송프로그램
 - < 방영권 구매 표준계약서 > 외주인정기준의 요건을 갖추고 외주제작사가 기획 등 방송프로그램 제작의 대부분을 수행하고 방송사는 방영권만 구매 방송프로그램
 - ▶ < 제작비 > 방송사와 제작사가 부담하는 제작비 세부내역 명시
 - 프로그램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품하였으나 방송사의 사정으로 방송하지 않는 경우에도 완성분에 대한 제작비를 지급하도록 함 **【제작】**
 - ▶ <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권리 > 저작권재산권은 방송사와 제작사가 기여도에 따라 상호 인정하되 유통활성화를 위해 이용허락 창구를 일원화 할 수 있음
 - ▶ < 원고료 · 출연료 등 지급보증 > ①제작사가 방송사에게 원고료 · 출연료 등의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거나 ②원고료 · 출연료 등을 지급할 때까지 방송사가 제작비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 **【제작】**
 - ▶ < 수익배분 > 권리별 이용기간과 수익배분 비율 명시 **【제작】**
 - ▶ < 손해배상 >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상대방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 배상
 - ▶ < 분쟁해결 > 「콘텐츠산업진흥법」상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신청, 「저작권법」상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 신청, 법원 소송 등 법률상 분쟁에 대한 해결 절차 명시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근로·하도급·업무위탁) 표준계약서 (3종)



목적 방송사·제작사의 인적·물적 자원 제공 의무와 스태프의 서비스 제공 의무를 명시하고 저작권법에 따라 스태프의 권리보호와 방송사·제작사의 영상저작물 이용 권리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제정

계약 당사자 방송사-제작스태프, 제작사-제작스태프

- 주요내용**
- ▶ **대상**
 - < 근로 표준계약서 > 방송사 또는 제작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 지휘감독 상황 하에 역무를 제공하는 자(근로자)
 - < 하도급 표준계약서 > 방송사 또는 제작사로부터 특정영역 일부에서 일의 완성에 대한 대가로 도급을 받는 자(하도급사업자)
 - < 업무위탁 표준계약서 > 제작스태프가 자신의 책임 하에 계약의 내용을 수행하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율성을 보장받은 자(업무위탁)
 - ▶ < 4대보험 가입 >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제작스태프'에 대한 4대보험 가입 의무화 **【근로】**
 - ▶ < 의무 >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제작스태프'의 안전 배려 · 보호의무 등 제작환경 개선을 위한 의무조항 마련
 - ▶ < 계약 및 역무제공 > '제작스태프'의 책임이 없음에도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계약내용 임의취소, 변경, 역무제공 부당 거부금지 **【근로】**
 - ▶ < 근로시간 및 임금 > 연장근로 대가 및 휴게시간, 임금지급 기일 준수, 부당하게 낮은 임금 금지 등 명시 **【근로】**
 - ▶ < 임금의 직접청구 > '제작사'가 약정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제작스태프'는 '방송사'에게 직접 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 **【근로】**
 - ▶ < 임금 지급 보증 >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요구하고, 임금 미지급 문제 발생 시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제작스태프'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업무위탁, 하도급】**
 - ▶ < 권리 > '제작스태프' 권리는 저작권법에 따르도록 명시 및 방송사·제작사의 영상저작물 이용 권리 규정 **【근로】**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1종)



목적 방송원고의 집필 및 사용을 중심으로 방송사·제작사와 방송작가 간에 명확하고 합리적인 권리관계를 규정하여 방송작가의 권리 보호 및 양질의 방송콘텐츠 제작환경 마련을 위해 제정

계약 당사자 방송사 - 방송작가, 제작사 - 방송작가

- 주요내용**
- ▶ < 원고료 >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잔금 등에 대한 명확한 금액 및 지급시기, 원고료 세부내역 명시
 - ▶ < 의무 >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작가'의 원고의 집필환경 개선을 위한 의무조항 마련
 - ▶ < 부당한 계약취소의 금지 >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작가'의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내용을 임의로 변경 · 취소하는 행위 금지
 - ▶ < 원고집필 부당거부 금지 >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작가'의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작가'의 원고 집필을 중지하거나 인도 거부 금지
 - ▶ < 저작권 및 2차 이용 > 저작권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르되 원고료, 제작비,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으며,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사용은 별도 계약에 따라 '작가'에게 사용료 지급
 - ▶ < 프로그램 홍보 및 출품 > '프로그램'의 예고 및 홍보를 위하여 '작가'의 원고를 사용하여 제작한 프로그램의 일부를 방송 또는 인쇄물 등에 사용
 - ▶ < 협찬 및 간접광고 > '작가'는 방송프로그램의 질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요청하는 협찬 및 간접광고 삽입 협조
 - ▶ < 이의분쟁 해결 > 이의 · 분쟁 시 당사자 간 합의,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 저작권위원회 조정, 관계 법령 등으로 해결
- ※ 방송작가가 원고 집필 및 업무를 담당하는 자료조사원, 취재작가 등으로 역할하거나, 프로그램 장르 및 업무특성 상 권리관계 규정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없는 경우, '방송 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계약서(근로/업무위탁)'를 준용하여 계약서 작성
- 특히 방송작가가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표준근로계약서 준용이 요구됨

대중문화예술인(배우·가수)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2종)



목적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정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송사·제작사, 대중문화예술인, 대중문화예술인의 소속사(매니지먼트사) 간 권리·의무관계를 규정하기 위해 제정

계약 당사자 방송사 - 대중문화예술인 - 매니지먼트사, 제작사 - 대중문화예술인 - 매니지먼트사

- 주요내용**
- ▶ < 지급주기 > 방송출연료는 방송 익월 15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함 * 미지급 발생시, 방송사가 직접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출연료 지급
 - ▶ < 이행보증 > 출연료 지급 기준은 촬영 기준이며, 출연료에 대한 지급보증보험 가입 등 출연료 미지급 예방장치를 마련해야 함
 - ▶ < 최대촬영시간 > 일일 최대 촬영시간은 18시간(가수의 경우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3일 초과하여 지속 할 수 없도록 함
 - ▶ < 휴식시설 > 장기 촬영의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촬영장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하여야 함
 - ▶ < 사고조치 > 촬영 중 사고를 당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하며, 이를 위해 상당한 가액의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 < 미성년자 보호 > 미성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및 학습권·수면권 등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함
 - ▶ < 보충촬영 > 재촬영 등 추가의 촬영 기간은 7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그 기간 동안 발생하는 제 비용을 지급해야 함
 - ▶ < 계약불이행 >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서에서 정한 출연 횟수의 100%에 해당하는 출연료의 10% 이상을 지급
 - ▶ < 권리의 귀속 > 저작권신탁관리단체와 특약을 체결하여 저작권접권 이용에 따른 사용료 지급 등 저작권법에 따라 권리 귀속 처리